

예 산 총 칙

2020년도 추경 5 회

제 1 조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618,222,830	18,546,685
일반회계	540,094,245	16,202,827
특별회계	78,128,585	2,343,858
공기업특별회계	37,612,730	1,128,382
상수도사업특별회계	37,612,730	1,128,382
기타특별회계	40,515,855	1,215,476
주택사업특별회계	12,200	366
의료보호특별회계	404,170	12,125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100,000	3,000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787,000	23,610
다목적댐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954,730	28,642
수질개선특별회계	37,118,412	1,113,552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발전사업특별회계	1,139,343	34,180

제 2 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과 같다.

제 3 조 [채무부담행위사업] "해당없음"

제 4 조 [계속비사업조서] "별첨"과 같다.

제 5 조 [명시이월사업조서] "별첨"과 같다.

제 6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4,901,879천원으로 한다.

제 7 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공기업특별회계 포함)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27,700,000천원으로 한다

제 8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

제 9 조 2020년 회계연도 중에 교부되는 국도비 보조금, 지방교부세 등은 예산승인된 것으로 간주처리하고 이를 의회에 보고한다.